

## 제10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록 (서면회의)

1. 회의일시 : 2013. 2. 19.(화)

2. 장 소 : 방송통신위원회

3. 참석위원 : 이계철 위 원 장  
김충식 부위원장  
홍성규 상임위원  
김대희 상임위원  
양문석 상임위원 (5인)

4. 불참위원 : 없 음

5. 회의내용

### ① 서면회의 사유

- 「방송통신위원회 회의운영에 관한 규칙」 제14조(서면결의)제1항제1호에 따른 제2009-30차 전원회의('09.7.9), 제2010-1차 전원회의('10.1.14), 제2011-17차 전원회의('11.3.21)에서 의결한 '토론을 요하지 아니하는 일상적·반복적 안건 또는 경미한 안건'에 해당됨

② 의결사항

가.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에 관한 건 - 애니맥스브로드캐스팅코리아 유한회사  
 - (2013-10(서)-026)

- 「방송법」 제9조제5항 및 제15조제1항에 의거, 애니맥스브로드캐스팅코리아 유한회사의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 신청 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함
- 주요 내용

<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 내용 >

신청법인	채널명	방송유형	방송분야	대표자	최다액출자자 (지분율)	납입자본금 (실질자본금)
애니맥스 브로드캐스팅 코리아 유한회사	애니맥스 플러스 (Animax+)	텔레비전	애니 메이션	홍승화	(주)케이티스카이 라이프 외 1인 (51%)	51.2억원 (50.6억원)

나. 방송심의 관련 제재조치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 처리에 관한 건  
 - 한국방송공사 - (2013-10(서)-027)

- 「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25조 및 「방송법」 제100조에 의거, 위원회가 명한 한국방송공사의 KBS-2TV ‘세상 어디에도 없는 착한남자’와 ‘해피선데이-남자의 자격’ 프로그램 제재조치 처분(‘13.2.12)에 대한 원심 집행정지 신청(‘13.2.14) 건에 대해 원안대로 재심 청구 및 결정이 있을 때까지 원심 결정의 집행을 정지하기로 의결함

< 원심결정의 개요 >

방송 프로그램명	주요 위반 내용	관련규정	제재조치 처분명령
KBS-2TV ‘세상 어디에도 없는 착한남자’ ’12.11.14.(수), 22:00-23:20	○ 드라마에서 여주인공(서은기)이 자신을 돕던 박 변호사의 교통사고에 대해 조사하던 중 비서에게 보고받는 내용을 방송하면서, - 서은기가 간접광고 제품인 ‘삼성 갤럭시노트2’의 ‘이지 클립’ 기능(이미지나 문서의 원하는 부분을 잘라내 다른 곳에 붙여 넣을 수 있는 기능)을 이용해, CCTV 정지화면 중 차량 부분만을 잘라낸 후 차량번호판 부분에 붉은색 표시를 하고, 비서에게 “이 사진 나한테 전송해주세요”라고 말하는 장면을 방송하는 등 상품의 특정기능을 시연 형태로 보여줌.	「방송심의에 관한 규정」 제 46조(광고 효과의 제한제2항	해당 방송 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 및 경고

방송 프로그램명	주요 위반 내용	관련규정	제재조치 처분명령
KBS-2TV '해피선데이 -남자의 자격' '12.11.25.(일), 12.2.(일), 17:00-18:10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리얼 버라이어티 프로그램에서 연예인과 일반인 등으로 구성된 패밀리 합창단이 부산국제합창 대회에 참가하는 내용을 방송하면서,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패밀리 합창단이 케냐 빈민촌의 지라니 합창단과 만나 '일일 친구되기' 미션을 수행하던 중 합창단원들이 간접광고 제품인 '삼성 갤럭시노트2'를 이용해 기념 촬영을 한 후 '페이퍼 아티스트'라는 애플리케이션(Application)을 이용해 촬영된 사진을 꾸미며 감탄하는 장면(11.25.)과,</li> <li>- 대회 전날 마지막 연습을 마치고, 해당 제품으로 어린이 단원들의 사진을 찍은 후 '포토 노트' 기능(사진 파일 뒷면 메모 기능)을 선택하여, 사진 뒷면에 메모하는 장면(12.2.)을 방송함.</li> </ul> </li> </ul>	「방송심의에 관한 규정」제 46조(광고 효과의 제한)항	해당 방송 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 및 경고

다. 「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징수 및 부과 등에 관한 사항」(고시) 일부개정안에 관한 건  
- (2013-10(서)-028)

○ 방송사업자의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징수율을 책정하기 위한 고시 일부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함

○ 주요 내용

① 지상파방송사업자 : 징수율 인하(7.3%)

- 지상파방송사업자의 '12년 방송광고매출 감소 등 어려운 경영상황과 높은 분담금 부담을 고려하여,

·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징수율을 KBS·EBS는 3.17%에서 2.94%, MBC·SBS는 4.75%에서 4.4%, 지역방송은 3%에서 2.78%, 라디오는 2.5%에서 2.32%로 인하여 적용

② 일반위성방송사업자 : 1% → 1.33% 징수율 인상(33%)

- 일반위성방송사업자(스카이라이프)의 개선된 경영상황과 동일한 방송시장에서 경쟁하는 사업자간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,

·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징수율을 1%에서 1.33%로 인상하여 적용

③ 기타 방송사업자 : 현행 징수율 유지

- 기타 방송사업자의 경영상황, 향후 방송통신발전기금 수지, 디지털전환 소요비용 등을 고려하여 현행 징수율 유지

○ 향후일정

- 고시 개정안 발령(관보게재) : '13. 2. 22.(금)예정